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①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16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4:00 인사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4:10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4:20발제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혁신 방안 송병춘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14:50 지정토론	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가나다 순)
15:35 종합토론	
16:05 폐회	

목차

인사말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제도개선 토론회 / 진선미	04
발제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혁신방안 / 송병춘	06
토론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종훈	96
토론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혁신방안 토론문 / 이기우	99
토론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규범	104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제도개선 토론회

진선미 / 제20대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견제수단이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속 이어지는 감사제도 관련 토론회중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자치 감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제안해주시고, 초대해주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활동가 분들과 특히 발제를 위해 애써주신 송병춘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올라와주신 윤종훈 감사위원장과 인하대학교 이기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흔히 21세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수 엘리트나 강력한 중앙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은 지 20여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배분 문제, 재정 문제 등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정 없는 성공이 없듯 지방자치제도는 결국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민주주의 확장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부분도 시민들이 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가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투명한 장치인지? 또 자치 감사에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다양한 참여, 소통이 가능한 것인지?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여져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일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이어 있을 공공기관과 감사원 감사제도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 기구가 될수 있도록 건강한 대안들이 많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안들을 국회에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민들이 위임해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혁신방안

송병춘 /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 들어가는 말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60%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32% 정도이다(2014년). OECD 평균은 41.9%이다.

이는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이 정부지출의 18.4%로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인데, 근래 들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지출의 성장률은 3.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정부지출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분야에 대한 지출이다. 각종 연금, 의료·보건, 장애인, 아동, 교육, 실업 급여 등이다. 그 밖에 공공질서와 안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진흥(economic affairs), 주택 및 주민편의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사회보장 지출의 OECD 평균은 32.4%이고, 북유럽 국가들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40%를 상회한다.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2016년 122.9조원, 31.7%, 보

건·일자리 포함)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있다. 교육분야 예산(53.2조원, 13.7%) 역시 지방정부(교육청)에 의해 집행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신뢰성,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정부예산 총계는 386.7조원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는 250조원이며, 시·도 교육청 예산 총계는 56.2조원이다.

2.31. Structure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 2013

	General public services	Defence	Public order and safety	Economic affairs	Environmental protectio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ealth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Education	Social protection
Australia	12.9	3.9	4.7	11.1	2.9	1.7	18.8	2.0	14.4	27.7
Austria	14.2	1.2	2.6	11.1	1.0	0.7	15.6	1.9	9.8	41.9
Belgium	15.5	1.7	3.4	12.2	1.8	0.6	14.6	2.4	11.8	36.1
Czech Republic	11.1	1.8	4.2	14.3	2.5	2.0	17.4	2.7	12.3	31.7
Denmark	13.6	2.3	1.8	6.3	0.7	0.5	15.3	3.2	12.3	43.9
Estonia	10.3	4.7	4.9	12.5	1.7	1.4	13.0	5.4	15.4	30.7
Finland	14.4	2.6	2.4	8.2	0.4	0.7	14.5	2.5	11.2	43.1
France	11.9	3.1	2.9	8.7	1.8	2.4	14.2	2.6	9.6	42.9
Germany	14.3	2.4	3.5	7.5	1.3	0.9	15.8	1.9	9.7	42.6
Greece	16.3	3.6	3.1	25.5	1.4	0.5	8.6	1.1	7.6	32.4
Hungary	20.9	1.0	4.2	13.7	1.8	1.6	10.4	3.7	9.5	33.3
Iceland	19.2	0.0	3.1	10.4	1.3	2.4	16.3	6.9	16.9	23.6
Ireland	16.5	1.0	3.9	7.5	1.6	1.6	17.4	1.8	10.2	38.6
Israel	13.5	14.4	3.9	6.8	1.5	1.1	12.2	3.7	16.3	26.6
Italy	17.5	2.3	3.8	8.2	1.8	1.4	14.1	1.4	8.0	41.3
Japan	10.6	2.1	3.1	10.3	2.8	1.8	17.5	0.9	8.5	42.4
Korea	17.1	7.8	4.0	16.8	2.4	3.0	12.1	2.2	16.3	18.4
Luxembourg	11.5	0.8	2.3	9.5	2.6	1.6	11.9	2.6	12.7	44.4
Netherlands	11.0	2.5	4.2	8.2	3.2	1.1	17.7	3.4	11.8	36.7
Norway	9.7	3.1	2.3	10.6	1.9	1.6	17.0	3.1	11.1	39.7
Poland	13.5	3.9	5.3	9.6	1.8	1.7	10.9	2.5	12.5	38.3
Portugal	17.9	2.1	4.4	6.7	0.8	1.4	13.3	2.0	13.5	37.8
Slovak Republic	13.4	3.1	8.0	7.9	2.2	1.7	18.3	3.1	12.2	30.1
Slovenia	11.3	1.6	3.6	24.2	1.2	1.2	11.6	3.0	10.9	31.4
Spain	15.5	2.1	4.5	10.0	1.9	1.0	13.6	2.6	9.1	39.7
Sweden	14.6	2.8	2.6	8.1	0.6	1.4	13.1	2.0	12.4	42.3
Switzerland	11.7	3.0	4.9	12.3	2.2	0.6	6.5	2.5	17.8	38.6
United Kingdom	12.5	5.0	4.8	6.8	1.8	1.5	16.7	1.7	12.0	37.2
United States	14.3	9.8	5.6	9.2	0.0	1.5	22.3	0.7	16.0	20.7
OECD WA	13.8	5.5	4.4	9.5	1.2	1.5	17.7	1.5	12.5	32.4
OECD UWA	14.0	3.3	3.9	10.8	1.7	1.4	14.5	2.6	12.1	35.7
Latvia	13.2	2.4	5.2	13.0	1.8	3.3	10.0	4.2	15.7	31.2

Sources: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Data for Australia are based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rovided by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48350>

2.32. Change in the structure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 2007 to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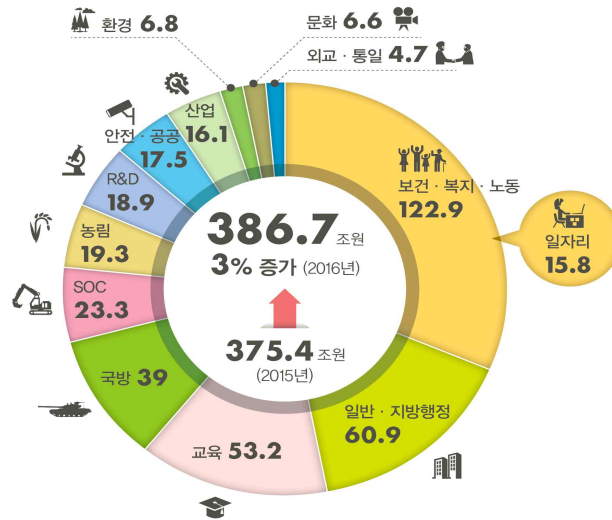
	General public services	Defence	Public order and safety	Economic affairs	Environmental protectio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ealth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Education	Social protection
Australia	2.3	-0.4	-0.4	-0.9	0.7	-0.6	-0.1	-0.4	0.1	-0.2
Austria	-1.2	-0.3	-0.1	-0.9	0.1	-0.1	0.3	-0.3	0.2	2.2
Belgium	-2.6	-0.4	0.0	0.9	0.6	-0.2	0.6	-0.1	0.2	1.2
Czech Republic	0.4	-0.9	-0.6	-1.7	0.1	-0.4	1.0	-0.2	0.6	1.9
Denmark	0.1	-0.5	0.0	0.4	-0.3	-0.2	-0.2	-0.2	0.3	0.7
Estonia	0.5	1.0	-1.3	-0.7	-0.8	-0.4	0.3	-0.6	-1.8	3.8
Finland	0.2	-0.3	-0.2	-1.1	-0.2	0.0	0.3	0.3	-1.2	2.2
France	-1.8	-0.2	0.1	0.5	0.1	0.2	-0.1	0.1	-0.5	1.5
Germany	0.1	0.2	0.0	0.2	0.1	-1.0	1.0	0.0	0.6	-1.3
Greece	-7.8	-2.3	-0.1	15.9	-0.3	0.0	-4.2	-0.2	0.3	-1.3
Hungary	1.8	-1.6	0.2	0.7	0.6	-0.4	0.4	0.8	-1.5	-1.1
Iceland	6.0	-0.1	-0.4	-3.4	-0.2	1.3	-2.4	-2.0	-2.3	3.4
Ireland	6.8	-0.2	-0.5	-3.8	-1.2	-4.0	-1.3	-0.3	-2.1	6.4
Israel	-3.7	-2.2	0.3	0.7	0.2	-0.3	0.7	0.5	2.2	1.6
Italy	-0.8	-0.1	-0.1	-0.7	0.1	0.0	-0.2	-0.4	-1.6	3.9
Japan	-1.7	-0.2	-0.4	0.6	-0.5	-0.4	1.0	-0.1	-0.9	2.5
Korea	-0.5	-0.1	-0.1	-3.4	-0.6	-0.7	1.6	-0.1	0.7	3.3
Luxembourg	-0.5	0.2	0.0	-1.5	0.1	0.1	-0.2	-0.7	0.6	1.9
Netherlands	-1.9	-0.5	-0.1	-1.7	-0.4	0.2	1.9	-0.1	-0.2	3.0
Norway	-4.5	-0.7	0.2	1.5	0.5	0.2	0.2	0.2	-0.6	3.0
Poland	0.8	-0.6	0.1	-1.2	0.3	-0.9	0.5	-0.1	-0.8	1.7
Portugal	2.6	-0.6	0.5	-2.9	-0.5	-0.4	-2.5	-0.3	-0.9	5.0
Slovak Republic	2.2	-1.9	1.2	-4.1	0.5	-0.4	0.5	1.0	0.4	0.6
Slovenia	-1.8	-1.6	-0.4	14.8	-0.5	-0.2	-2.3	0.1	-3.2	-4.9
Spain	2.9	-0.4	-0.3	-3.3	-0.7	-1.3	-1.0	-1.5	-1.2	6.7
Sweden	-0.8	-0.3	0.0	0.3	-0.1	0.0	0.3	0.0	-0.3	1.0
Switzerland	-1.1	0.0	0.1	-0.6	0.6	-0.1	0.4	0.1	0.4	0.2
United Kingdom	1.8	-0.2	-0.9	-0.3	-0.3	-1.0	0.9	-0.5	-1.8	2.4
United States	-0.9	-0.9	-0.3	-0.6	0.0	-0.3	1.5	-0.1	-1.1	2.6
OECD WA	-0.6	-0.5	-0.2	-0.3	-0.1	-0.4	0.8	-0.2	-0.8	2.3
OECD UWA	-0.1	-0.6	-0.1	0.1	-0.1	-0.4	0.0	-0.2	-0.5	1.9
Latvia	1.7	-1.7	-2.1	-1.0	-0.8	-0.3	-2.0	-0.8	-0.8	7.8

Sources: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Data for Australia are based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rovided by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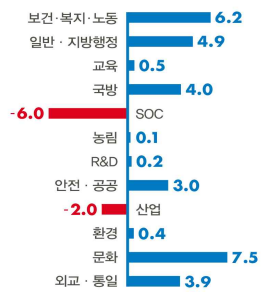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48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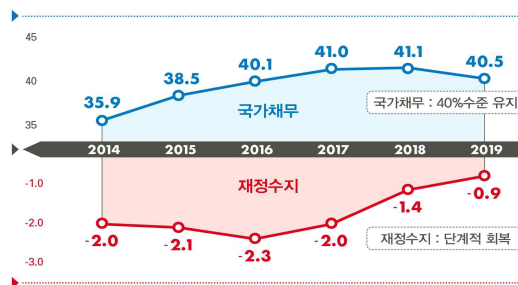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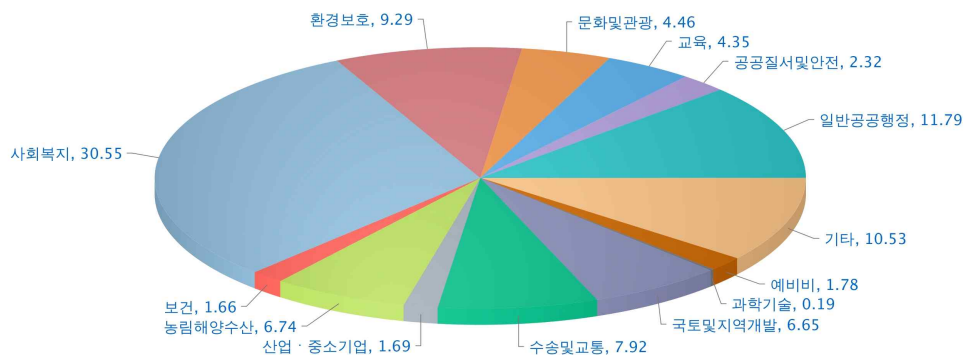
증가율
(단위 : %)



재정수지·국가채무 비율 전망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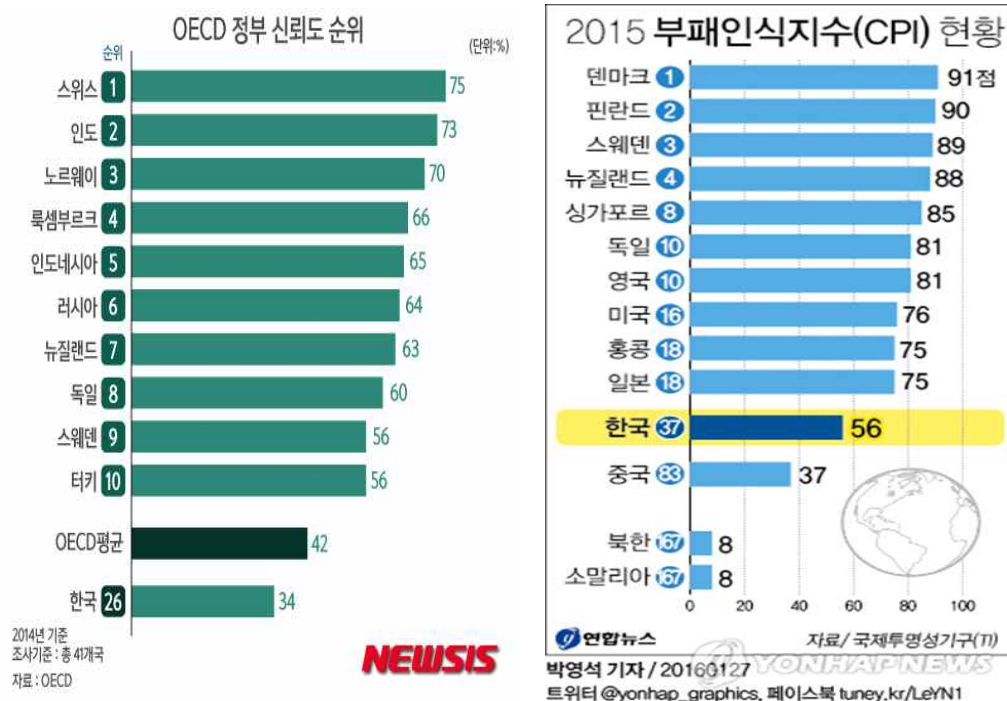


기능별 자원별 세출예산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평균 42%, 우리나라 34%, 26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부패인식 지수도 매우 낮은 편이다.(우리나라 56점, 37위)



2. 지방정부 재정 현황

가. 성남시 세출총괄표(2016)

세 출 총 괄 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33,634,442	100.00 %	2,355,191,023	100.00 %	△21,556,581	△0.92 %
010 일반공공행정	89,635,617	3.84 %	94,563,381	4.02 %	△4,927,764	△5.21 %
011 입법및선거관리	3,215,774	0.14 %	3,589,966	0.15 %	△374,192	△10.42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5,998,204	0.26 %	3,044,930	0.13 %	2,953,274	96.99 %
016 일반행정	80,421,639	3.45 %	87,928,485	3.73 %	△7,506,846	△8.54 %
020 공공질서및안전	4,957,232	0.21 %	4,040,676	0.17 %	916,556	22.68 %
025 재난방재·민방위	4,957,232	0.21 %	4,040,676	0.17 %	916,556	22.68 %
050 교육	67,688,951	2.90 %	68,471,548	2.91 %	△782,597	△1.14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66,987,413	2.87 %	67,886,510	2.88 %	△899,097	△1.32 %
053 평생·직업교육	701,538	0.03 %	585,038	0.02 %	116,500	19.91 %
060 문화및관광	106,732,206	4.57 %	129,334,371	5.49 %	△22,602,165	△17.48 %
061 문화예술	56,428,468	2.42 %	63,945,357	2.72 %	△7,516,889	△11.76 %
062 관광	229,720	0.01 %	280,550	0.01 %	△50,830	△18.12 %
063 체육	48,521,306	2.08 %	64,376,523	2.73 %	△15,855,217	△24.63 %
064 문화재	1,552,712	0.07 %	731,941	0.03 %	820,771	112.14 %
070 환경보호	322,296,709	13.81 %	302,482,214	12.84 %	19,814,495	6.55 %
071 상하수도·수질	226,756,695	9.72 %	209,229,745	8.88 %	17,526,950	8.38 %
072 폐기물	78,450,370	3.36 %	77,372,901	3.29 %	1,077,469	1.39 %
073 대기	10,995,736	0.47 %	5,975,857	0.25 %	5,019,879	84.00 %
074 자연	952,990	0.04 %	1,356,582	0.06 %	△403,592	△29.75 %
076 환경보호일반	5,140,918	0.22 %	8,547,129	0.36 %	△3,406,211	△39.85 %
080 사회복지	584,548,171	25.05 %	564,445,581	23.97 %	20,102,590	3.56 %
081 기초생활보장	102,418,302	4.39 %	87,972,220	3.74 %	14,446,082	16.42 %
082 취약계층지원	59,435,362	2.55 %	57,726,135	2.45 %	1,709,227	2.96 %
084 보육·가족및여성	189,975,054	8.14 %	197,207,303	8.37 %	△7,232,249	△3.67 %
085 노인·청소년	210,087,063	9.00 %	198,237,773	8.42 %	11,849,290	5.98 %
086 노동	12,869,030	0.55 %	13,559,384	0.58 %	△690,354	△5.09 %
087 보훈	6,261,878	0.27 %	5,985,573	0.25 %	276,305	4.62 %
089 사회복지일반	3,501,482	0.15 %	3,757,193	0.16 %	△255,711	△6.81 %
090 보건	76,151,354	3.26 %	66,441,999	2.82 %	9,709,355	14.61 %
091 보건의료	74,949,629	3.21 %	65,232,690	2.77 %	9,716,939	14.90 %
093 식품의약품안전	1,201,725	0.05 %	1,209,309	0.05 %	△7,584	△0.63 %

【 기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륜
100 농림해양수산	9,752,962	0.42 %	9,566,913	0.41 %	186,049	1.94 %
101 농업·농촌	3,871,571	0.17 %	4,156,140	0.18 %	△284,569	△6.85 %
102 임업·산촌	5,881,391	0.25 %	5,410,773	0.23 %	470,618	8.70 %
110 산업·중소기업	33,707,099	1.44 %	34,357,012	1.46 %	△649,913	△1.89 %
114 산업진흥·고도화	25,038,886	1.07 %	29,105,024	1.24 %	△4,066,138	△13.97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998,987	0.09 %	634,561	0.03 %	1,364,426	215.02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6,669,226	0.29 %	4,617,427	0.20 %	2,051,799	44.44 %
120 수송및교통	196,745,967	8.43 %	292,620,328	12.42 %	△95,874,361	△32.76 %
121 도로	67,387,593	2.89 %	105,272,689	4.47 %	△37,885,096	△35.99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29,358,374	5.54 %	187,347,639	7.95 %	△57,989,265	△30.95 %
140 국토및지역개발	580,947,684	24.89 %	549,266,388	23.32 %	31,681,296	5.77 %
141 수자원	689,800	0.03 %	745,128	0.03 %	△55,328	△7.43 %
142 지역및도시	579,442,330	24.83 %	547,558,770	23.25 %	31,883,560	5.82 %
143 산업단지	815,554	0.03 %	962,490	0.04 %	△146,936	△15.27 %
160 예비비	35,070,043	1.50 %	32,415,085	1.38 %	2,654,958	8.19 %
161 예비비	35,070,043	1.50 %	32,415,085	1.38 %	2,654,958	8.19 %
900 기타	225,400,447	9.66 %	207,185,527	8.80 %	18,214,920	8.79 %
901 기타	225,400,447	9.66 %	207,185,527	8.80 %	18,214,920	8.79 %

나. 인천 남구 세출 분야별 현황(2015)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6,683	100	394,107	100	438,760	100
일반공공행정	20,432	6.07	24,555	6.23	28,425	6.48
공공질서 및 안전	3,099	0.92	2,949	0.75	3,243	0.74
교 육	8,958	2.66	8,790	2.23	5,718	1.30
문화 및 관광	4,404	1.31	5,603	1.42	6,112	1.39
환경보호	13,100	3.89	14,996	3.80	16,132	3.68
사회복지	191,024	56.74	228,995	58.10	261,362	59.57
보 건	11,450	3.40	10,122	2.57	11,517	2.62
농림해양수산	420	0.12	506	0.13	423	0.10
산업·중소기업	4,449	1.32	3,509	0.89	3,530	0.80
수송 및 교통	5,275	1.57	6,447	1.64	6,525	1.49
국토 및 지역개발	8,202	2.44	19,965	5.07	20,612	4.7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566	1.06	3,964	1.01	5,046	1.15
기 타	62,303	18.50	63,704	16.16	70,113	15.98

3. 공공감사의 기능

가. 공공기관의 보고·설명 의무와 공공감사

과거 개발과 성장 위주로 재정이 운용되던 시기(고도성장기)에는 웬만한 낭비나 공직자의 비리도 묵인되는 분위기였다면, 복지, 사회보장 등으로 재정 운영의 중점이 옮겨가는 시기에는 재정의 효과성,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 등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3E 또는 4E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전제로 하여 구현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헌신성과 성실성(↔ 사익 추구, 나태)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사무의 처리 상황, 특히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민에게 보고·설명할 의무가 있다. 책무

성 즉, 공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성실의무, 청렴의무는 보고·설명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보고·설명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대리인에게 성실성, 청렴성을 기대할 수 없다. 책무성을 뜻하는 accountability은 account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정부3.0**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재정 등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공개에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충분성, 이용가능성, 신뢰성이 그것이다.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은 제3자의 검토·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담보될 수 있다. 제3자의 검토·확인 과정이 바로 공공감사(audit)의 기능이다. audit의 어원은 audire로서 hear 또는 listen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정보공개를 공공기관의 재량에만 맡길 경우, 공공기관은 특정한 정보를 숨기거나 사업 성과를 부풀리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충분성과 진실성을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나. 감사(audit)와 감찰(inspection), 민원조사(advocate)

중앙정부의 감사원은 감사(audit)와 감찰(inspection)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인데, 1963년 종래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든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는 감사와 감찰, 민원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감사과, 조사과, 민원해소과(민원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의 3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감사기구가 최소한 감사과와 조사과의 2개 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사기구의 주된 기능은 역시 회계검사, 성과감사 등으로서 공공기관 행·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감사는 공공사업 및 공적 회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감찰은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감사와 감찰은 위와 같이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도 분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감찰은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사후적으로!) 대통령 또는 시장이 감찰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겠지만, 감사 기능은 집행부가 공개하는 정보의 진실성,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관을 집행부 수장의 지휘 하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이어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Public Advocate(옴부즈만, 민원조사관)과 Comptroller(감사관)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며, 조사국(Department of investigation)은 시장 산하 부서로서 Commisioner를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교육청에는 Special Commisioner를, 경찰청, 주택청에 각각 Inspector General을 두고 있다.¹⁾



4.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가. 독립성

1) <http://comptroller.nyc.gov/>

<http://www.lacontroller.org/>, <http://www.nyc.gov/html/doi/html/about/bio.shtml> 등 참조

위와 같은 공공감사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감사기구의 장,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에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8.28., 제정]

제8조 (독립성) ①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③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같은 이유로 서울시와²⁾ 제주도의 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³⁾

나. 전문성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감사기법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업, 관련 법령, 기술 등에 대한 이해,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감사대상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관점 등을 말한다. 흔히 전문성을 감사 대상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나 경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쌓은 경력은 오히려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해당 분야의 교수, 전문가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대상 기관과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관점’은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기구는 감사인에게 학습과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8.28., 제정]

제9조 (전문성) ① 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민주적 대표성에 의존한다.

감사기구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감사기구에 민주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자치단체들처럼 감사기구의 장(=comptroller)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든가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 하에서는 감사관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주도처럼 최소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시장과 의

회가 공동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감사 사각지대와 외부감사의 필요성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더라도 감사기구 자체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모든 감사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오늘 날 교육과 복지, 산업과 일자리, 문화·체육, 보건·의료, 주거, 안전 등 시민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막대한 재정이 공공부문에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 공공 부문은 대부분 감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가 대부분 민영화되거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부 기관은 이제 수탁기관 선정, 보조금 지급,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즉,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공공행정 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 주체가 책임운영기관 - 공기업 - 민간단체(기업) 등으로 다양화되었는바, 공공부문의 규모가 워낙 방대해진 데다가, 분야도 다기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일반공채, 정년보장, 순환보직)만으로는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표> 민간위탁 위탁비용 산정기준

민간위탁 대상 분야	대상사무	산정기준 여부
1. 단순집행 사무	주차차량 견인 및 관리	없음
	도로 유지보수 관리	없음
	시설물 유지보수, 식당운영	없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SW 대가 산정지침
2. 전문적 시설관리 사무	상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운영비 산정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	없음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운영비 산정지침
	폐기물처리시설	없음
3. 시험, 연구, 조사 사무	건설안전 시험, 교량안전 점검	없음
	설계, 감리	설계, 감리비 산정기준
4. 단순집행적 시설, 장비관리 사무	차량, 중장비 관리	없음
	터미널 관리, 선박관리	없음
	산업단지, 노변관리	없음
5. 서비스제공 사무	방역, 예방접종	없음
	검사업무, 민간교육	없음
	납골당 관리, 공원묘지 관리	없음
	시험, 관리	없음
6. 운영활성화 사무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없음
	도서관, 박물관, 수련원, 학습원	없음
	공원, 연수원, 주민이용 개방시설	없음
7. 사회복지시설 운영	복지회관, 보훈회관	있음
	보육시설, 노인회관	있음
	장애인회관, 요양원	있음
	각종 복지시설	있음
8. 민간자원 활용 사무	양묘, 화훼관리, 잠종관리, 원종관리	없음
9. 신기술 적용 사무	기술교육, 위생교육	없음
	직업훈련 및 대회 개최	없음
	교육용 사업, 에너지 공급사업	없음
	주요 시설물 공사, 기계설비 공사	없음
10. 광고/홍보 사무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인쇄원가 기준
	기타 간행물 제작	인쇄원가 기준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원(2012), 서울시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 방안/서울연구원/2015, 76쪽에서 재인용

서울시의 경우,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2015년 한 해 민간위탁 사업은 총 363건, 1조 642억원으로, 보건·복지, 환경·위생, 문화·체육, 경영수익, 도시·교통, 주택·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26건의 사업에, 4,5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둘을 합치면 서울시는 2015년 한 해 동안 민간위탁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조 5,182억원을 쓰고 있음. 이는 서울시 예산(일반회계)의 8.3%에 해당한다.

더욱이 민간기업(단체)들이 이익단체로서 정치세력화 되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화 되는 경향도 있다. -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사례

- 계약 : 공사 감리, 시설물유지관리, 경영평가, 연구용역
- 위탁 :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중간지원조직(각종 센터)
- 보조금 : 버스&택시, 사립학교, 보육시설, 직업교육,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주민조직, 사회적 기업

<표> 구로구 공공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현황(2015, 1억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금액(개수)	비중(%)
예산 총액	468,172,371	
민간(자본)이전 합계	142,200,108	30.37%
1억원 이상 사업 수 및 예산	87개 사업 132,443,034	28.28%
위탁 및 보조금 단체(업체) 수	77개 단체(업체)	

5-3-7. 구로구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 현황

* 2014년, 2015년 연간 감사계획 공개합

구분	감사대상기관	공개일
종합	동주민센터-신도림동, 구로3동, 구로5동, 개봉2동, 오류2동	20140204 - 법인카드 결제결과 동량 감사 20140422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특근급식비 및 가족수당) 점검결과 20140704 - 국민불편 인·허가 분야 특별감사 결과
	생활복지국	20140722 - 동 행정 종합감사 결과 공개
	보건소	20140728 - 환경분야 부분감사 결과 공개
	환경분야-환경과	20140805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출장여비) 점검결과
특별	시설물분야-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20141118 -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20150209 - 생활복지국 종합감사결과 공개

외부감사란, 독립된 감사기구가 각 피감기관의 특성에 맞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주기적으로 성과

(보고서 등)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재계약 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운영 실태

<표> 17개 광역 시·도 감사기구 운영 현황

조사항목	광역 시·도(17)
감사기구의 소속	*광주, 서울, 제주, 충남은 단체장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나머지는 부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의 장 외부전문가 임용	*감사원 출신 4(경기, 서울, 전남, 전북) *행자부 출신 3(광주, 세종, 인천) *시민사회 인사 2(제주, 충남) *나머지는 내부관료 임용
감사 직렬·직류 도입	서울, 제주 - 전환 중
전문계약직 채용	경기, 서울, 제주
감사기구의 장의 인사 추천권	경기, 서울, 제주 - *순환보직제 하에서는 명목상 권한임
감사기구 예산 중 교육훈련비 편성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제주
연간감사계획(비공개)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감사결과(비공개)	보고서를 대부분 비공개하거나,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
민간위탁·보조금 등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실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북, 제주, 충남 *미실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충북
시민감사관 운영	서울, 강원, 경기, 광주, 대구, 부산, 서,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상근·반상근 시민감사관 임용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관+옴부즈만 겸임)

6. 자치감사에 대한 제 기관의 입장

가.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71조의2

자치단체(장)를 중앙정부 또는 관료기구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함. 언제나 ‘갑질’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그러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며(*지방감사1, 2국이 26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410개 지방공기업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감사원 정원은 1,035명, 현원 1,003명에 실제 감사요원은 600여명에 불과하며, 감사 대상인 중앙 행정기관과 그 산하 지방사무소, 국가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단체 등이 4,700여개에 달함) - 감사원 감사연보 2015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2015. 12. 31.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자치단체를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그리고 기타단체를 합하여 모두 67,953개 기관이고,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의 인원은 1,327,899명이다.

(단위: 개, 명)

구 분		합계	국가기관	지 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단체
대상기관	합 계	67,953	8,501	27,671	1,624	30,157
	필요적 감사대상	37,435	8,501	27,671	954	309
	선택적 감사대상	30,518	-	-	670	29,848
필요적 감사대상기관 인원		1,327,899	337,316	840,738	88,913	60,932

주) 국가기관에는 경찰서 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 지방자치단체에는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기관에는 지방사무소 등 산하기관이 포함됨

무엇보다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대표성 문제).

독립적인 자치감사기구가 설치되더라도,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나 지방감사원 등의 자치감사 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이들 감사 사무를 지방감사기구에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단체장

직무감찰을 제외한 감사권(audit)은 본래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함.

더욱이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이 아닌 감사기구(=감사관)는 부단체장 소속이고,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관료조직의 이해관계에 기속되어 있으므로 단체장은 감찰권조차 행사하기 어려움.

다. 관료기구

감사원과 의회의 감사에 덧붙여 중복감사 우려. 실제로 하반기에는 감사자료 준비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

감사원, 의회 등의 감사는 수감 부담은 크지만, 매우 선택적이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므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자치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오히려 의회, 중앙정부(감사원) 등에 의한 중복감사의 부담을 덜 수 있음.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와 감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라. 지방의원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회의 감사기능과 중복된다는 오해.

오히려 독립된 감사기구의 충실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의 감사 기능이 보완될 수 있음.

충분한 감사 자료를 확보하여 청문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공공감사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감사
- audi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7.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가.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

감사위원회를 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치감사 기구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에 외부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 별첨자료5. 자치감사 조례(안) 참조

<조례 제정 사례>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구 등
시민감사관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1) 감사기구의 장

감사기구의 직무상 독립은 감사기구의 장의 민주적 대표성에 의존한다. 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감사기구의 조직적 독립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 감사기구가 직무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이 시민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감사 권한을 수권받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감사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할 수는 있다.

예컨대 의회와 단체장이 공동으로 감사위원(장) 공모·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사직렬 도입

감사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한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 감사직렬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년보장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선호하므로, 7급 이하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전직보다는 신규 공채를 통해 충원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계약직(전문임기제) 임용

자치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IT전문가, NGO활동가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고(일반 공채를 통해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어려우며, 외부전문가를 일반직으로 특채할 경우 ‘음서제’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특히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년보장 일반직공무원 보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감사기구의 장의 인사권

제주도나 서울시 등은 조례 상에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승진·전보 등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추천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감사직렬 또는 감사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때, 감사기구의 장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형위원회에 감사기구의 장을 참여시킨다든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5)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내부 감사인력만으로는 검증하는 감사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독립성·전문성 결여라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부전문가를 상근·반상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시민감사관을 비상근으로만 위촉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 운용을 위한 예산(감사참여수당, 교육훈련비)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이 단체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만 허용하고, 직권에 의한 감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단체장이 시민감사관에게 특정 사업이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

국 내부 감사담당공무원들의 필요에 따라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감사에 보조적으로 참여 또는 참관하는 수준의 활동에 머무르게 된다.

감사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은 시민감사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상 독립은 실지감사 및 감사결과의 처리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감사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이 담당할 감사 업무를 연간감사계획에서 따로 정하고, 시민감사관이 자기 책임 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권감사를 허용해야 하며, 업무분장 등을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독자적인 교육훈련 예산 확보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감사의 전문성이란, 감사대상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수집, 감사기법의 숙지 여부에 의존한다고 할 것인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감사기구의 연간 예산에 교육훈련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대부분 총무부서 또는 인력개발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 쓴다).

공공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기법 등에 대하여 심화학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매 감사 때마다 전문가 워크숍 등 감사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사기구의 예산 중에 반드시 별도의 항목을 두어 교육훈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7)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보고서 의회 제출

감사 결과는 피감기관에 통보될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 단체장, 그리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히 집행부 견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의회가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회는 사무처리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따져 예·결산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청문회를 열어 문제점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지방감사원 설립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내부 인력 운용이나 유능한 감사 전문가의 확보 등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지방감사원을 설치하여 지방공기업과 민간위탁, 그리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향후 각 자치단체장 소속의 감사위원회는 직무감찰을 담당하고, 회계감사, 성과감사 등 본래의 감사업무(audit)는 지방감사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위탁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영역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권오철,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12. 제11쪽)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51조(사무의 위탁),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나 재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무의 특성상 공동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공사·용역 등의 계약,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보조금 등 방대한 감사수요에 비추어 훈련된 전문인력(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이 부족하고, 260여 개에 이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무처리의 독립성,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지방감사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지방감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감사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역적인 분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반면, 지방감사원은 지역적 분권화의 토대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분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시·도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행정청으로 볼 수 있듯이, 지방감사원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별행정청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지방감사원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 외에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특별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주민을 직접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조례·규칙의 제정권은 부여될 필요가 없으나,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감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자체 감사인력을 보유하고 감사 사무에 관한 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 실시, 감사결과의 보고 등)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감사원 설치를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겨 두기에는 의사형성 과정이 매우 지난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감사원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감사원 설립을 직

접 강제한다든가 설립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간에 규약을 제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작성한 규약이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지방감사원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할 것이다.

지방감사원법에는 지방감사원의 명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 공동처리 사무, 조합회의, 집행기관의 구성 방법, 경비조달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감사원법 제정은, 반드시 기존의 감사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조례 등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방감사원이 설치됨으로써 향후 감사원과 중앙정부 부처의 감사기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감사기구 사이에 적극적인 역할 분담, 중복감사의 방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방감사원이 설치되면,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중앙 행정부처가 감사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여전히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지방감사원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후견적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6. 지방감사원법(안) 참조

1) 영국 지방감사원 사례

영국의 지방감사원(Audit Commission 1983~2015)의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1983년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2로 행정자치부 장관 산하에 Audit Commission을 설치하였고, 2015. 4. 1. 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2014로 지방자치단체연합(LGA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산하에 PSAA(Public Sector Audit Appointments Limited)를 설치하였다.⁵⁾

4) 가칭 「감사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5) <http://www.psaa.co.uk/> 참조 - 1983년 설립된 Audit Commission은 2015. 4. 1. 자로 지방정부연합LGA(local government association)가 설립한 Public Sector Appointments Limited로 대체되었고 여기서 감사계약audit

Audit Commission은 지방자치단체⁶⁾, 국민보건서비스, 경찰, 소방 및 긴급구조기관, 공원, 보호관찰위원회, 주택, 교통, 연금, 환경 등 96개 분야, 1만 1,000개의 기관에 대하여 전담 외부감사인을 지명하였으며, 당초에는 소속 직원(in-house auditors)을 감사관으로 지명하기도 하였으나, 2012.부터는 모든 감사인을 외부 감사인(주로 감사법인⁷⁾)으로 선임하였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을 지명하는데, 통상 1명을 지명한다.

LGA에는 2015/2016 현재 43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으로는 350개의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local council)와 22개의 웨일즈 지방자치단체, 31개의 소방안전당국(fire authority), 10개의 국립공원(national park) 등이 있다.

PSAA가 353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와 299개의 국민건강서비스기관(National Health Service bodies), 76개 경찰관서(police bodies), 31개 소방안전 단체(fire and rescue bodies), 기타 37개 기관·단체(the Greater London Authority and associated bodies, national parks authorities, transport bodies)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명하는 것은, 영국 지방자치부(the 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지방감사법(the 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2014)에 의해 PSAA에 부여한 법적 권한이다.

PSAA는 감사인을 지명할 뿐만 아니라, 감사 비용을 결정하고, 징수하며, 감사의 질 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Quality Review Programme annual report).

contracts을 관리하고 있음.

6) City, county, Borough, District 등

7) 5 Audit Firms

■BDO LLP

■Ernst & Young LLP

■Grant Thornton UK LLP

■KPMG LLP

■Mazars LLP

PSAA는 또한 10,000여개의 소규모 기관·단체(town/parish)⁸⁾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명하고 있다.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감사인을 지명해야 하며, 재지명할 수도 있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례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991), 자치정보화조합(2003),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2003, 해산 2011.), 부산-김해 경전철 조합(2004, 해산 201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200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2004), 수도권 교통본부(2005), 황해 경제자유구역청(2008),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2008),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200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2010) 등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14.12.31 기준)

8) town/parish council은 마을의 공공건물, 공원, 시민농장, 운동장, 가로등, 버스 정류장, 주차장, 인도, 놀이시설, 공중화장실 관리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시설들을 돌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열성적인 지역주민들이 직원으로 활동한다.

명 칭	구 성 원	목 적	승인일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경남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 1.2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경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 1.20
수도권 교통본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교통 광역교통 추진 운영	'05. 2. 4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충남도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 사무 및 외자유치 등	'08. 6.10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경북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8. 6.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장수·구례·곡성· 함양·산청·하동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관광개발사업 공동 추진	'08. 9. 5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6개 시·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상생 발전 재원으로 활용	'10. 5. 3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91.11.7)'은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⁹⁾

※ '자치정보화조합('03.1.21)'은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 2.21)¹⁰⁾

※ (해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부산광역시-경남도, '11. 6. 8),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부산광역시-김해시, '11.12.29)

8. 맺는말

공공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많은 정보공개 포털을 만들더라도 정부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9)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1991년 공동으로 설립(조합 규약 제정)

-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서울 6, 인천 3, 경기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 조합장이 있고 조합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사무국 직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파견하는 공무원(서울 14, 인천 11, 경기 10) 중에서 조합장이 임명

-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환경부 산하 공사로 전환

10)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2003년 설립, 200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자치단체조합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

공공감사는 행정 정보의 진실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공무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무사안일과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라야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권에 예속되어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검찰을 대신하여 수사하거나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별도의 기구를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공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모든 공공사업에 대하여 필요·충분한 감사 - 즉,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위원회와 지방감사원을 설치하여 감사 기능을 분권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므로, 이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러나 독립된 감사위원회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지방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의하면 곧바로 설치될 수 있으므로, 지방감사원 설치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몫입니다.

정부 보조금에 기생하는 일부 이익집단과 관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기구의 혁신을 회피하는 자치단체장은 지방분권을 요구할 자격이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논하고 대권을 꿈꿀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끝.

* 첨부자료

- ① 구로구 공공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현황
- ② 구로구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 ③ 안산시 공공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현황
- ④ 안산시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 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⑥ 지방감사원법(안)
- ⑦ 자치단체조합설립매뉴얼(행자부)
- ⑧ 한국재정정보원법

별첨자료1

구로구 공공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현황(2015, 1억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금액(개수)	비중(%)
예산 총액	468,172,371	
민간(자본)이전 합계	142,200,108	30.37%
1억원 이상 사업 수 및 예산	87개 사업, 132,443,034	28.28%
위탁 및 보조금 단체(업체) 수	77개 단체(업체) - 단일사업 내 복수의 수탁단체가 있는 경우: 167개(중복 포함)의 공동주택(주민자치위원회·주민소모임), 360개의 어린이집, 188개의 경로당	

* 1억원 이상 민간이전 목록(2015 추경예산서 기준)

연 번	부 서	위탁사업명	수탁단체(업체)	편성목	예산(천원)	비고
1	지 역 경 제 과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서울남부노동희망센터)	민간위탁금	68,216	283,801천 원 집행
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남구로시장(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 단)	민간경상사업 보조	126,000	
3		골목형 시장 육성-	구로시장(MC주식회사)	민간경상사업 보조	156,000	
4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시장청년사업단	민간경상사업 보조	210,940	
5	일 자 리 지 원 과	기업 청년인턴지원	1.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2. 아하열린교육센터 3. (사)늘푸름사업단 늘푸름보호작업장 4. (재)행복아이씨티 5. (주)미센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00	
6		지역맞춤형일자 리창출지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민간위탁금	278,880	
7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1.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2. 한국복지방송(주) 3. 아하열린교육센터 4. 한사랑문화사업단 5. (주)프라임서비스 6. (주)키플 7. 따뜻한마음청 소년센터 8. 두리하나 9. (주)도토리문화학교	민간위탁금	198,518	

8		마을기업 육성	1. 행복한 밥상 2. 배고픈사자협동조합 3.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30,000	
9	복지 정책 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 구립구로종합사회복지관 2. 구립화원종합사회복지관 3.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자본이전- 민간 대행사업비	145,672	
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1. 구립구로종합사회복지관 2. 구립화원종합사회복지관 3.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199,958	
11	보육 지원 과	어린이집 간식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구로구 관내 360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426,800	
12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13,000	
13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9,216,624	
14		영유아보육료지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35,994,000	
15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회복지사업 보조	15,114,430	
16		어린이집(민간) 교재 교구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46,010	
17		교사근무환경개 선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115,900	
18		만3~5세담임수 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4,903,920	
19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678,650	
20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6,342,830	
2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326,416	
22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04,120	
23		육아종합지원센 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13,990	
24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구로구 관내 360개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 보조	125,500	

25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6,588	
26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민간대행사업 비	100,000	
27		향동어린이집 이전 신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 비	200,000	
28		아동돌봄지원사 업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918,426	
29		건강가정지원센 터 운영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75,100	
30		가족역량강화지 원 서비스	구로구 관내 360개 어린이집 가운데 일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81,500	
31		구로1동 어린이집 신축		민간대행사업 비(특별교부금)	1,780,000	
32		천왕7단지 어린이집 신축		민간대행사업 비	150,000	
33		은비 어린이집 매입 전환		민간대행사업 비	125,000	
34		다문화가족지원 특화		민간경상사업 보조	110,000	
35		어린이집CCTV 설치지원		민간대행사업 비	393,222	
36	사 회 복 지 과	장애인종합복지 관 운영비 지원	1.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2. 성프란시스교장애인종합복지관 3.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380,719	
37		장애인복지증진 강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2. 성프란시스교장애인종합복지관 3.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7,720	
38		장애인 활동지원	구 직접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7,433,000	
39		시각장애인안마 치료서비스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18,336	
40		자활사업운영	1. 구로샅터지역자활센터 2. 구로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017,936	
41		지역자활센터 운영	1. 구로샅터지역자활센터 2. 구로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466,000	
42		가사·간병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사업	110,780	

		방문도우미 지원		보조		
43	노인 청소 년 과	경로당운영지원	구로구 내 188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994,951	
44		구립온수 어르신복지관운 영지원	대한노인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540,264	
45		저소득노인생활 안정 지원	대한노인회	사회복지사업 보조	428,570	
46		경로식당 운영	구 직접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580,000	
47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98,760	
48		노인돌봄기본서 비스 제공	돌보미 파견업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80,126	
49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바우처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99,560	
50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한양인재개발원	민간자본이전	284,646	
51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운영	구로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40,000	
52		아동급식지원	쿠폰 지급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680,000	
53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구직접 사업? 상담사 파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20,000	
54		지역아동센터 운영	구로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20,120	
55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상담사 파견? 캠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00,000	
56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상담사파견? 구 직접사업?	민간위탁금	294,980	
57	교육 지 원 과	토요체험학교 프로그램	따뜻한마음 청소년센터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131,000	
58		진로직업체험지 원센터 운영	(주)한양인재개발원	민간위탁금	100,000	
59		구립학습종합지 원센터 운영	1. 에듀e스쿨 2. 하브루타부모교육연구소 3. 메가스터디 4. 공부혁명대 5. 비타에듀 6. (주)브라운글로벌에듀	민간위탁금	140,000	

60		지역사회 연계 관·학 프로그램운영	1.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 고려대 평생교육원 3.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민간위탁금	182,500	
61	주택 과	공동주택안전관 리 및 지원	개봉건영아파트 등 113개 아파트 시설물유지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330,000	
62	건설 관 리 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 동아피엠(주) 2. 대한상이군경회구로구지회	민간위탁금	234,000	
63	총 무 과	구 청사 관리위탁	?	민간위탁금	240,000	
64	자 치 안 전 과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개봉동 아이파크 아파트 등 16개 공동주택?	민간경상사업 보조	265,200	
65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 새마을운동 구로구지회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 구로구협의회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구로구지회 운영비 4. 광복회 5. 상이군경회 6. 전물군경유족회 7. 전물군경미망인회 8. 무궁수훈자회 9.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0. 고엽제전우회 11. 6.25참전유공자회 12. 월남전참전자전우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299,720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22,280	
66		행복마을조성 1) 행복마을사업 지원 2) 주민제안 구로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3) 마을공동체생태 계 지원사업비	1. 신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2. 지구인 공정여행 등 14개 단체(모임) 3. 구로3동 새마을부녀회 등 11개 단체(모임)-불확실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00	
67	문 화 체 육 과	서울구로국제어 린이영화제 개최	?	민간위탁금	190,000	
68		구로문화원 운영	구로문화원	민간이전	127,000	
69		구의회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 위탁	(주)아이디일일구닷컴	민간위탁금	450,000	
70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	구로구 생활체육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138,000	
71	청 소	음식물폐기물 처리	1. 삼미환경 2. 정문환경	민간위탁금	4,117,200	

			3. 대생이엔티			
72	행정과	재활용수거운반	현대자원	민간위탁금	2,091,000	
73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1. 동아환경(주) 2. 원진환경(주) 3. 삼진환경(주) 4. (주)신영환경	민간위탁금	500,000	
74		폐기물 광역처리	?	민간위탁금	150,000	
75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대한영양사 협회	민간위탁금	360,000	
76	지역보건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 보건소 직접지원	의료 및 구료비	260,403	
77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민간위탁금	712,944	
7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사)복지와사람들	민간위탁금	245,480	
79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민간위탁금	611,952	
80		모자보건	구 보건소 직접집행?	의료 및 구료비	1,268,942	
81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구 보건소 직접지원?	* 의료 및 구료비 * 민간경상사업 보조	530,097	
8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구 보건소 직접	민간위탁금	448,580	
83		국가예방접종	구 보건소 직접지원	의료 및 구료비	5,269,235	
84		결핵관리 사업	구 보건소 직접지원	민간이전	188,145	
85	의약과	임상병리검사	구 보건소 직접지원	의료 및 구료비	174,140	
86		야간, 휴일진료센터 운영	구 보건소 직접지원	의료 및 구료비	346,322	
87	주차관리과	불법주차 견인	상일산업사	민간위탁금	216,216	
					132,443,034	

별첨자료2

구로구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5-3-7. 구로구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 현황

* 2014년, 2015년 연간 감사계획 공개함

구분	감사대상기관	공개일
종합	동주민센터- 신도림동, 구로3동, 구로5동, 개봉2동, 오류2동	20140204 - 법인카드 결제계좌 통장 감사 20140422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특근급식비 및 가족수당) 점검결과 20140704 - 국민불편 인·허가 분야 특별감사 결과
	생활복지국	20140722 - 동 행정 종합감사 결과 공개
	보건소	20140728 - 환경분야 부분감사 결과 공개
	환경분야-환경과	20140805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출장여비) 점검결과
특정	시설물분야-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20141118 -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20150209 - 생활복지국 종합감사결과 공개

별첨자료3

안산시 공공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현황 (1억 이상 민간이전 사업)

(단위: 천원)

구분	금액(개수)	비중(%)
예산 총액	1,415,155,262	
민간이전 합계	222,089,093	15.69%
1억원 이상 사업 수 및 예산	232개 사업, 210,947,770	14.90%

* 목록

연 번	부 서	사업명	수탁단체(업체,개인)	통계목명	2016예산	2015예산	비고
1	자 치 행 정 과	새마을회 사업지원	안산시 새마을회	경상사업보조 , 운영비 보조	114,445 ¹¹⁾	118,826	
2		새마을문고 사업지원	안산시 새마을문고	경상사업보조 , 법정운영비 보조	110,000	108,600	
3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안산시자원봉사센 터	민간위탁금	910,000	910,000	
4		좋은마을만들 기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안산YMCA	민간위탁금	621,300	654,000	
5		다희망마을주 민공모사업	선녀마을주말농장체험 학습장 등 27개 모임(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	105,000	0	
6		사이좋은사2동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사업	(사)안산YMCA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	
7	민 원 여 권 과	민원콜센터 운영	효성ITX(주)	민간위탁금	880,966	869,137	
8	기 획 법 무 과	안산.광명.시 흥 범죄피해지지 원센터 지원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지지원센터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00	100,000	
9	지 역 경 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등	안산패션타운발전협의 회 등 3개 단체	위탁금,경상 사업보조	524,000	490,000	

	과						
10		상록수가거리, 안산패션타운 축제	안산패션타운발전협 회 등 3개 단체	민간행사사업 보조	167,000	0	
11	생명 산업 과	본오지구수리 시설정비사업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200,000	200,000	
12		유기동물 위탁사업처리	(사)한국야생동물보호 협회 경기도 남부지회	민간위탁금	130,000	136,000	
13		사료 작물 종자대 곤포비닐지원 등	농가	경상사업보조	111,720	0	
14		다용도축산장 비지원사업/곤 포사일리지단 지조성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105,000	222,468	
15		쌀소득보전직 불금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351,911	351,911	
16		발농업직접직 불금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120,000	8,000	
17		유기질 비료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471,940	613,100	
18		FTA기금 생산시설현대 화사업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150,000	150,000	
19		포도농가지원 사업	농가	민간자본이전	712,400	712,400	
20		시설채소포장 재지원사업	농가	민간자본이전	150,000	112,500	
21		톱밥발효우사 톱밥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112,000	112,000	
22		어린이승마체 협교실 등	사업시행여부 미확인	민간경상사업 보조	147,600	133,000	
23	녹 색 에 너 지 과	에너지절약추 진사업-공동주 택 네가와트 발전소 조성사업,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등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민간자본사업 보조	1,120,500	220,000	
24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지원 사업	김복연 외 33명(개인)	민간자본사업 보조	555,000	240,000	
25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화정동, 와동	민간자본사업 보조	900,000	0	
26	복 지 정 책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	상이군경회 안산시지회, 광복회 안산시지회 등 9개 단체	의료및구료비 ,법정운영비 보조	264,500	262,200	

27		사회복지관운영비 등 지원	1.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선부종합사회복지관) 2.사회복지법인안산제일복지재단(초지종합사회복지관) 3.사회복지법인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본호종합사회복지관), 4.사회복지법인연꽃마을(부곡종합사회복지관), 5.사회복지법인굿프렌드복지재단(와동조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2,735,120	2,346,225	
2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26,900	126,900	
29	과	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	1.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선부종합사회복지관) 2.사회복지법인안산제일복지재단(초지종합사회복지관) 3.사회복지법인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본호종합사회복지관), 4.사회복지법인연꽃마을(부곡종합사회복지관), 5.사회복지법인굿프렌드복지재단(와동조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175,000	175,000	
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¹²⁾	8개 사업에 79개 기관이 서비스 제공(박경호언어심리치료실, 다리꿈발달상담센터 등)	민간위탁금	2,011,200	1,675,040	
31		가시간병도우미사업	1.도우누리안산돌봄센터, 2.사회적협동조합양지돌봄	민간위탁금	173,000	165,873	
32		자활근로사업추진(민간기관)	1.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2.경기안산양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	1,595,162	1,274,295	
33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2.경기안산양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78,091	464,200	
34		주거(수선유지)급여	NH(토지주택공사)	사회복지사업보조	173,034	171,780	
35	사	장애인편의시		민간단체법정	115,529	116,600	

		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운영비보조			
36		중증장애인콜 승합차운영,지 체장애인특장 차운영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	법정운영비보 조	131,500	105,500	
37		장애인생활안 정지원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 37개소 및 개인 신고시설 5개소 종사자	민간위탁금, 법정운영비보 조	822,288	565,957	
38		중증장애인활 동보조지원사 업		민간위탁금	8,852,268	8,184,470	
39		장애아동가족 지원 ¹³⁾		민간이전	1,875,322	1,933,412	
40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 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44,000	144,000	
41		장애인공동생 활가정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481,300	481,300	
42		장애인복지시 설임소자지원(4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64,611	164,611	
43	회 복 지 과	장애인복지시 설운영지원(7 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220,670	1,220,670	
44		장애인지역사 회재활시설종 사자수당(이양 사무)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부 외 1	민간이전	211,700	205,800	
45		안산장애인복 지관운영비지 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민간위탁금	1,553,000	2,575,000	
46		상록장애인복 지관운영비지 원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민간위탁금	1,290,000		
47		장애인단기보 호시설운영(3 개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475,000	475,000	
48		장애인주간보 호시설운영(이 양사무)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 9개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646,975	1,572,475	
49		안산장애인재 가복지센터운 영	안산장애인재가복지센 터	민간위탁금	112,259	112,259	
50		장애인직업재 활시설운영비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부 외 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666,667	1,666,667	
51		장애인생활시 설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6,331,160	6,331,160	
52		중증장애인자 립생활센터운		사회복지사업 보조	149,875	245,000	

	영					
5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00	0	
54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44,000	250,000	
55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52,260	218,000	
56	명휘체육관운영비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4,000	138,000	
57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5,000	105,000	
58	장애인지원센터운영	(사)안산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간위탁금	184,112	156,112	
			사회복지사업보조	181,247	151,947	
59	노인양로시설운영비	1.단원구 경로당: 134개 2.상록구 경로당: 113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5,204	122,921	
60	노인양로요양시설특수근무수당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8,343	153,583	
61	노인복지관운영비	1.(사복)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2.(사)대한노인회	민간위탁금	1,500,086	1,357,297	
62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20,000	300,000	
63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2개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5,000	124,000	
64	노인일자리확충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3,759,038	3,702,410	
65	노인일자리확충수행기관전담인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80,323	143,880	
66	시니어클럽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30,000	230,000	
67	시니어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09,600	0	
68	1경로당 1취미여가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	149,940	149,940	
69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도우미파견운영)	1.도우누리안산돌봄센터, 2.사회적협동조합양지돌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69,750	517,087	
70	노인돌봄미바우처,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42,560	545,760	

71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안전돌보 미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04,672	160,600	
72		독거노인사회 관계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02,640	0	
73		노인단체지원	1.상록구 노인지회 2.단원구 노인지회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117,000	60,000	
74	여 성 가 족 과	가정폭력통합 상담소운영	안산 가정·성폭력통합상담 소	법정운영비보 조,사업보조	184,176	182,310	
75		가정폭력가해 자교정치료프 로그램	안산 가정·성폭력통합상담 소	사회복지사업 보조	112,000	110,000	
76		가정폭력피해 자보호시설운 영	안산 여성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16,396		
77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성폭 력피해자의료 비	가톨릭 여성상담소	사회복지사업 보조	149,458	149,631	
78		여성인력개발 센터운영지원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00,000	199,400	
79		여성근로자복 지센터운영지 원	안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30,000	113,000	
80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	200,000	300,000	
81		안산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 제,사후관리서 비스,취업설계 사운영등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	494,259	643,576	
82		건강가정지원 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	204,060	167,300	
83		행복예절관운 영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275,000	270,000	
84		아이돌봄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	971,053	847,347	
85		가족역량강화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	279,000	320,500	
86		요보호아동그 룹홈형태보호	공동그룹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782,226	1,326,360	
87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운영비) 지원	신나는그룹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26,470	0	
88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4,105,208	3,472,692	

		운영비지원		법정운영비보조			
89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26,472	165,600	
90		시군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이양사무)	세이브 더 칠드런	민간위탁금	591,332	206,600	
91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43,600	234,000	
92		아동청소년통 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마 을사업지원)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사 업보조	192,400	190,000	
93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1.안산동산교회 2.사회복지법인연꽃마 을 3.사회복지법인굿프렌 드재단 4.사회복지법인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5.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 6.학교법인 새빛학원 7.개인 어린이집 다수	사회복지사업 보조	360,000	0	
94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379,900	0	
95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 료 지원(시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1,121,659	0	
96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090,988	8,714,198	
97		공공형어린이 집운영비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392,447	1,570,720	
98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5,360	147,347	
99		공공형어린이 집인건비(취사 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45	252,500	
100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082,013	2,082,013	
101		영세아전용어 린이집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503,400	432,490	
102		시간연장형어 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50,207	276,000	
103		보조교사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674,624	0	
104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39,178	272,300	
105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47,055	104,650	

106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396,000	396,000	
107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지원(+아 이러브맘카페 운영지원)	학교법인 새빛학원	민간위탁금	638,300	541,500	
108		시립안산스마 트허브어린이 집 교직원 인건비	개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84,490	168,000	
109	문 화 예 술 과	안산문화원 운영지원(이양 사무)	안산문화원	위탁금, 경상사업보조	530,046	459,416	
110		통합문화이용 권(문화누리카 드)사업운영	경기문화재단	민간경상사업 보조	1,064,600	912,570	
111		공사립박물관 미술관지원사 업	1.정문규미술관 2.유리섬 3.향토사 4.어촌박물관	민간경상사업 보조	78,000	106,000	
112		예술단체지원	심심하지않은학교 등	경상사업보조 , 법정운영비보 조	128,200	70,200	
113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1.예총 9개 지부 2.민예총 1개 지부	민간행사사업 보조	101,210	102,450	
114		찾아가는 문화활동	마네트 상사화 등 58개 팀	민간행사사업 보조	138,720	162,000	
115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쌍계 사)	쌍계사	민간자본사업 보조	340,000	100,000	
116		제31회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지원	안산시체육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320,000	320,000	
117	체 육 진 흥 과	2016희망마라 톤대회 개최지원	안산시체육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00	200,000	
118		생활체육지도 자 활동비지원, 피복비지원, 체육회 육성	안산시체육회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73,600	273,600	
119		생활체육대회 개최	안산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 , 행사사업보조	396,000	396,000	
120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안산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	285,200	285,200	
121		지역단위생활	안산시체육회	민간단체법정	135,960	135,360	

		체육지도자배치(인건비)		운영비보조			
122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인건비)	안산시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44,728	243,648	
123		체육바우처지원사업	안산시체육회	민간위탁금	233,100	222,801	
124		엘리트체육대회지원(시장기, 협회장기, 도및 전국대회, 의장기)	안산시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00	320,000	
125		다문화가족미니월드컵개최	안산시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95,000	315,000	
126		엘리트체육육성지원	안산시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법정운영비보조	1,080,000	1,080,000	
127		체육단체육성지원	안산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법정운영비보조	350,000	450,000	
128		장애인엘리트체육육성지원	안산시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10,000	
129		장애인엘리트체육대회출전 및 훈련지원	안산시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115,000	110,000	
130		장애인체육회운영	안산시장애인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36,000	206,000	
131	식품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신안산대학교	민간위탁금	400,000	360,000	
132	주택과	공동주택지원사업	고잔7단지 외 27개 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	750,000	750,000	
133	환경정책과	지방의제21사업추진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의제21 실천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30,186	230,186	
134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250,000	
135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경기안산녹색소비자연대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	
136		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교체개선	공단 내 기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	0	
137		운행차저공해사업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태화상운주식회사	민간자본사업보조	4,385,992	4,543,880	
138		저녹스버너설치사업	공단 내 기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9,600	109,200	추경에서 1억 이하로 감액
139		천연가스버스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민간자본사업	744,000	693,000	

			사 태화상운주식회사	보보			
140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	기아자동차	민간자본사업 보조	210,000	270,000	
141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공단 내 기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00	150,000	
142		제1회 ESP 아시아지역총회 개최	자연환경국민신탁	민간행사사업 보조	112,500		
143	자 원 순 환 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공단가로청소위탁	1.생활폐기물: 성호산업(주)등 13개업체, 2.가로청소: 명스환경(주)	민간위탁금	21,730,000	21,600,000	
144		자원회수시설 위탁	한불에너지관리(주)외 1개사	민간위탁금	6,124,392	5,624,400	
145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위탁	(주)그린니스	민간위탁금	4,386,648	4,738,356	
146	녹지과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	헬리코리아(주)	민간위탁금	400,000	400,000	
147	교통정책과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사업	안산시자전거연합회 외 1	경상사업보조,행사사업보조,보험금	458,000	418,000	
148	대 중 교 통 과	2층버스 구입지원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태화상운주식회사	민간자본사업 보조	1,800,000	201,316	
149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결제수수료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태화상운주식회사	민간경상사업 보조	456,339	0	
150		운수업체유가 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선진교통문화협의회 안산시지부	운수업체보조금	32,000,000	30,000,000	
151		맞춤형 따복버스 지원	사업진행 무산	운수업체보조금	140,000	0	
152	상 록 보 건 행 정 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기초생활수급자간병비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의료 및 구료비	200,000	203,000	
15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지자체보조(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시범사업(상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비, 위탁금	1,494,770	900,194	
154		암환자의료비 지원	의료보험공단 직접사업- 보건소 대행	의료 및 구료비	658,140	636,000	
15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직접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107,333	0	

		운영비 지원		조			
156		반월도시보건 지소 일반진료의 업무대행(가급) ,한방진료의 업무대행(나급)	의사 초빙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153,071	148,097	
157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금	469,485	326,900	
158	단 원 보 건 행 정 과	정신건강증진 센터위탁운영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금	1,716,000	1,156,000	
159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운영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금	458,948	415,315	
160		원곡보건지소 운영	의사 초빙 인건비 등	의료비, 위탁금	149,508	111,247	
161		대부보건지소 운영	의사 초빙 인건비 등	의료비, 위탁금	116,153	40,600	
162	보 건 소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소 직접 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4,596	132,320	
163		금연보조제	보건소 직접 사업	의료 및 구료비	198,000	110,000	
164		국가암검진비 예탁	보건소 직접 사업	의료 및 구료비	408,370	0	
165		결핵예방사업	보건소 직접 사업	의료비, 위탁금	462,588	407,690	
166		예방접종사업 지원	의사초빙 인건비, 약품비 등 보건소 직접 사업	민간위탁금	381,699	242,547	
167		어린이예방접 종	365열린의원 등 151개 의원	의료 및 구료비	6,637,086	0	
168		성인예방접종	21세기의원 등 103개 의원	의료 및 구료비	1,124,642	0	
169		희귀난치성질 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직접 사업	의료 및 구료비	730,000	0	
170		선천성대사이 상검사사업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직접	의료 및 구료비	164,983	164,983	
17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직접	의료 및 구료비	306,226	306,226	
172		난임부부지원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직접	의료 및 구료비	1,086,840	1,086,840	
173		산모신생아건 강관리지원사 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수탁업체	민간위탁금	681,542	686,800	
17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직접	민간위탁금	270,160	0	
175		치매치료관리 비(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직접 관리	의료 및 구료비	136,400	14,900	
176		장애인산모신 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		의료 및 구료비	108,195	333,880	

		산후조리원비 용지원					
177		임상병리실 검사용 시약, 소모품, 어패류 구입		의료 및 구료비	189,000	159,340	
17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67,745	0	
179		(통합)영양플 러스보충식품 비		의료 및 구료비	103,520	127,850	
180		치매치료관리 비(약제비 등)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36,400	14,900	
181	농 업 기 술 센 터	벼 못자리 상토지원	농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130,000	130,000	
182		새기술보급시 범사업(19개세 부사업)	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	423,200	378,500	
183		벼 병해충 농약공급	농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350,000	270,000	
184	관 광 과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	(사)안산시관광협의회	민간위탁금	187,500	87,000	
185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	(사)연안보전 네트워크	민간위탁금	100,000	0	
186		새우양식-친환 경 저탄소 바이오플라 첨단양식 단지구축사업	(주)네오 엠비즈	민간자본사업 보조	2,000,000	1,000,000	
187	해 양 수 산 과	어업자원자율 관리육성사업	말부흥어촌계 등 3개 어촌계	민간자본사업 보조	238,500	172,800	
188		고효율어선유 류절감장비지 원	박현우 등 7인	민간자본사업 보조	210,000	90,000	
189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도비 미지급으로 사업추진 불명확	민간자본사업 보조	1,127,400	0	
190		해양아카데미 운영지원	안산시 체육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00	0	
191	산 업 정 책 과	산학연구동연 구개발-선도대 학육성사업,산 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신안산대학교	민간경상사업 보조	230,000	130,000	
192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1.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중진공 안산POST-BI센터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800	568,260	
193		노동단체행사	한국노총	민간행사사업	154,800	134,800	

		지원-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등	안산지역지부	보조			
194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 업-사무국운영 , 사업비	노사민정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법정운영비보 조	171,828	50,000	
195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1.민주노총안산지역지 부 2.한국노총안산지역지 부	민간위탁금	947,000	947,000	
196		비정규직노동 자지원센터위 탁운영비	안산.시흥비정규직노 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18,000	218,000	
197	일 자 리 정 책 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담당자 휴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147,238	247,500	
198		(예비)사회적 기업일자리창 출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 앙협의회 경기도지부	민간경상사업 보조	556,000	598,000	
199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 앙협의회 경기도지부	민간경상사업 보조	115,571	196,096	
200		사회적경제지 원센터 운영	(사)한국사회적기업지 원협의회 경기도 지부	민간위탁금	380,000	250,000	
201		(예)사회적기 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 앙협의회 경기도지부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00	0	
202		일자리센터운 영-컨설턴트인 건비지원,사업 비지원	스텝스(주)	민간위탁금,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820,000	815,000	
203	기 업 지 원 과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이자 차액지원	공단 내 기업	민간이전-이 차보전금	200,000	200,000	
204		소규모기업한 경개선사업	공단 내 기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403,020	390,000	
205	산 단 환 경 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2014년 14개 업체, 2015년 7개 업체, 2016년 미정	민간자본사업 보조	500,000	376,667	
206	평 생 학 습 과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	안산대학교	민간위탁금	1,150,000	1,200,000	
207		안산화정영어 마을위탁운영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금	968,400	1,068,531	
208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부 모교육'	안산지역사회교육협의 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119,000	104,000	
209	교 육 청 소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 2.(사)들꽃청소년세상	민간위탁금	717,462	437,590	
210		청소년상담복	(사)제일청소년회	민간위탁금	342,000	342,000	

		지센터운영					
211	년 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안산YWCA	민간위탁금	453,540	436,500	
21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제일청소년회	민간위탁금	285,849	256,931	
213		시군학교박청 소년지원사업(기금/지원)	(사)제일청소년회	민간위탁금	138,000	67,000	
214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00	100,000	
215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	(사)제일청소년회	경상사업보조 ,위탁금	136,500	136,500	
216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위탁(안 산,일동,사동, 선부)	(사)안산YWCA	민간위탁금	594,868	544,632	
217	중앙 도 서 관	공사립작은도 서관운영지원(6곳)	신길셋별작은도서관 등 6곳	민간위탁금	501,834	463,689	
218	외 국 인 주 민 센 터=다 문 화 지 원 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운영지 원	(사)YWCA		427,985	397,410	
219		안산글로벌다 문화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	
220		여성결혼이민 자 보호시설 운영(국비)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14,598	114,598	
221		외국인주민통 역상담지원센 터 운영지원	(사)안산제일복지재단	민간위탁금	285,000	281,000	
222		이주아동청소 년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민간위탁금	270,000	270,000	
223		다문화가정학 습지원-언어발 달지원,방문학 습지지원	1.학습지: 대교 눈높이 2.언어발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	165,271	170,201	
224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엠마우스 어린이집 등 15개 어린이집 지정	사회복지사업 보조	265,200	162,750	
225	U- 정 보 센 터	U-City 1단계 정부지급금, 2단계 지급금	1.1 단계: KT 컨소시엄 2.SKT 컨소시엄	민간위탁금	4,720,000	4,826,000	
226	상 록 행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위탁 사업	학교법인 새빛학원	민간위탁금	400,000	400,000	

	정 지 원 과						
227	구(단원, 상록구)직접사업	경로식당무료급식	1.단원: 단원경로식당 등 7개 식당 2.상록: 일동경로식당 등 6개 식당	사회복지사업보조	1,041,045	957,690	
228		경로식당취사원 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	457,736	336,000	
229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1. 단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 2.상록: 엠마우스 경로식당 등 6개 식당	사회복지사업보조	303,000	296,800	
230		농가소득보전및지원	농가	민간자본이전	128,200	92,075	
231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도로상불법행위단속 등	1. 단원: (사회복지법인)특수미래재단 등 2개업체 2. 상록:	민간위탁금	345,040	205,040	
232	해양수산과	김활성화처리제지원사업	대부도 김양식어촌계	민간경상사업보조	374,400	421,200	
			합계		210,947,770	178,247,879	

11) 퇴직금, 조위금, 연금지급금 357,975천원은 제외함

12) 중위소득 120~170% 이내의 소득을 가진 지역민 중 위기가정,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게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등 제공. 바우처 제도

13)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별첨자료4

안산시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5-2-6. 안산시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 현황

* 2014년, 2015년 연간 감사계획 홈페이지 비공개

구분	감사대상기관	공개일
종합	상록수보건소	
	산업지원본부	20140217- 본청 일상감사 결과
	상록구청	20140227- 시립 0000어린이집 특정 감사 결과
	외국인주민센터	20140605- 상록수 보건소 감사결과
	의회사무국	20140728- 1/2분기 건설사업장 컨설팅 감사 결과
	경기테크노파크	20140826- 민간이전분야(사회복지) 특정감사 결과
	청소년 수련관	20140923- 외국인주민센터 감사결과 보고
특정	보조금분야	20141231- 3분기 감사결과
	민간위탁분야	20141231- 4분기 컨설팅 감사결과
	컨설팅 현장감사(1차)	20150303- (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 보고
	컨설팅 현장감사(2차)	20150423- 산업지원본부 종합감사 결과
	컨설팅 현장감사(3차)	20150423- U-정보센터 감사결과
	컨설팅 현장감사(4차)	20150423- 경기테크노파크 감사결과
		20150625- 민간위탁 특정감사

별첨자료5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862호, 2015.5.14., 제정]	자치감사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1.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2. 직무감찰의 개시에 관한 사항
☐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시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모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모추천위원회는 시장과 의회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지명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7.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위촉을 해제한다.	
☐ 제9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5조의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사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직류로 보한다.
□ 제16조(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 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 제1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법 제27조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산하에 시민감사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 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보고·설명 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② 의회는 그 의결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 대한 감사요구 등) 참조

별첨자료6

지방감사원법(안)

조 문	○○경제자유구역청 조합 규약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지방감사원'(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00특별시와 00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도와 ○○○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및 하부조직) ① 조합의 사무소는 00시 00구 00로 99에 둔다. ② 지방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 지방사무소를 비롯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시 ○○구 ○○로 99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합원이 위탁한 감사 사무 2. 조합원의 장 및 의회,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통보 3. 감사보고서의 공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이 조합은 ○○경제자유구역안의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 내 ○○○도·○○○도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도지사○○○도지사의 직접 수행사무 2.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3. 투자유치(외자유치를 포함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5. 외국인 생활 여건의 개선 6. 그 밖의 경제자유구역의 관라·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 (조합회의) ① 조합회의는 조합원의 감사기구의 장 중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10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한 10명의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조합원의 감사기구의 장의 후임자가 승계하며, 그 임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 9명, ○○○도 9명, ○○부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와 ○○○도의 투자유치 및

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도시개발담당 실·국장 각 2명 2. ○○○○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도와 ○○○도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각 2명 4.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5명 5. 그 밖에 ○○○도지사와 ○○○도지사가 추천하는 5명(경제분야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 제3호, 제5호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예에 따른다. ⑦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 2.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3. 조합장 후보의 추천 4.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6.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7.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8. 부설기관, 지방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 규약에서 조합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7.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

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법령,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조합회의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도·○○○도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도지사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임명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조합회의의 구성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한다. ③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의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의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합원의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합원의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합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

할 수 있다.	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기타) ①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자치감사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조합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도의회, ○○○도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7

자치단체조합설립매뉴얼(행자부)



지방자치단체조합



1

개요

■ 개념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권은 불인정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는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같지만, 법인격 유무에 따라 차이

■ 연혁

- '88. 4. 6,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89.12.30,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능 강화(특정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로 명확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제164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구성 및 권한

▶ 조직 구성

- 조합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 집행기관의 장인 조합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 배치
 - － 조합회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음

▶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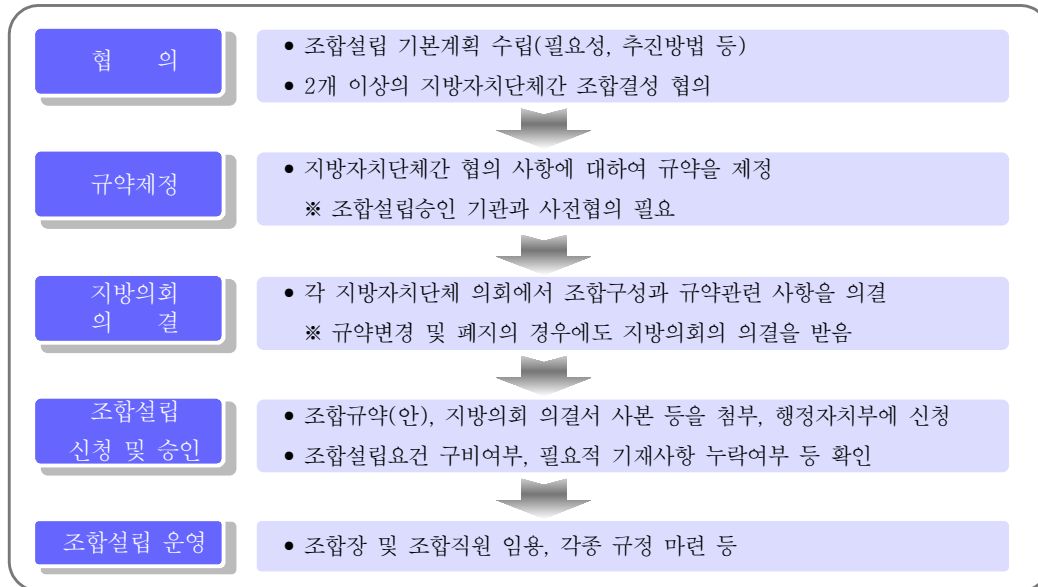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징수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총괄

▶ 조합의 지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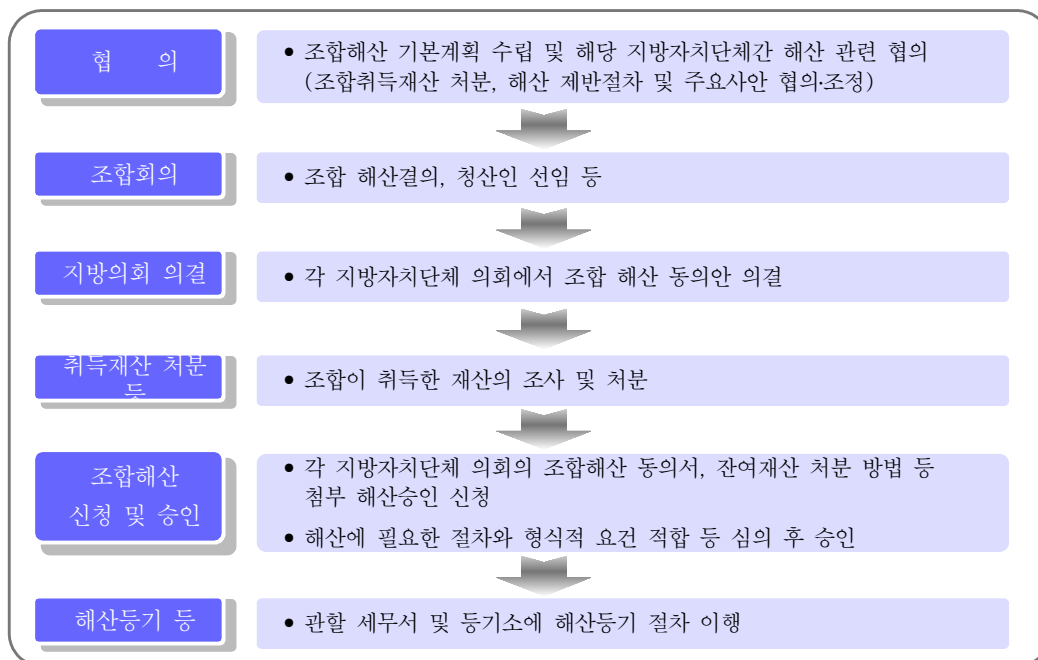
- 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 단, 시·군·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합의 설립·해산·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① 조합설립 절차



② 조합해산 절차



Ⅰ 조합설립

▶ 조합설립 기본계획의 수립

- 조합설립 목적 및 필요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 및 규약의 주요내용
- 조직 및 인력 구성방법
- 향후 추진일정 등

▶ 지방자치단체 협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규약내용, 조합장 및 사무기구의 구성, 조합장 선임방법, 경비 부담 등 협의

▶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지출방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 의결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작성한 규약을 각 지방의회 의결절차 이행
-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절차 이행

▶ 조합설립 신청

- 조합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신청
 - －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합의 규약 및 지방의회 의결 결과

- 조합설립 기본계획(조합의 설립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 등 포함)
- 조합의 조직 및 정원운영 계획

▶ 조합설립 검토 및 승인(행정자치부)

- 조합 설립요건 구비여부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 조합경비의 부담률 및 재정구조의 안정성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조합장 및 조합회의 구성·운영의 적절성 등

참고: 자치단체 조직·정원 승인(자치제도과)

▶ 결원보충의 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다만, 시도/시군구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은 시도 이양*
- *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08.9.30)

▶ 신청절차 : (결원보충 사전협의*) → 파견 → 신청 및 결원보충(승인)

* 사전협의는 결원보충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둔 장치임

▶ 조합설립 운영

- 조합사무소의 설치
- 조합회의 구성, 조합장 및 사무직원 임용
- 각종 운영규정 마련
- 조합 설립 등기(고유번호등록 등)

Ⅰ 조합해산

▶ 해산 기본계획 수립

- 조합해산 진행계획, 조합회의 개최, 청산인 선임 등 해산기본 계획을 수립
- 조합취득 재산 처분 및 사무의 이관계획 등 조합해산에 따른 제반절차 등 추진계획 등을 수립
- 해산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 등에 의견 수렴

▶ 조합회의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결

- 조합의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등을 조합회의에 상정 처리
 - ※ 청산인 의무
 - － 조합의 사무, 재산목록 실사·확인
 - － 조합과 체결한 협약·계약·기타 권리의 관계자 통보 및 합의
 - － 승계대상 조합사무 및 권리·의무사항 등의 조합회의 보고
- 조합운영 관련 각종 규정 폐지규정안 의결
-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조합 폐지 규약안 상정·의결

▶ 취득재산·사무이관 실사

- 조합이 취득한 유·무형 재산목록 및 조합사무 전반조사
- 자산, 권리·권한 등에 대한 이관조서 작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 자산·사무이관 계획에 따라 단계별 관리전환 및 사무이관 실시

▶ 조합해산 신청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해산 승인을 요청
 - － 조합 해산신고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합해산 의결서
 - － 조합의 해산관련 회의록 및 안건
 - － 조합의 취득재산 및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조합해산 검토 및 승인(행정자치부)

- 조합해산을 위한 절차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의 적합 여부 판단
 - － 조합해산 사유의 정당성
 - － 조합해산을 위한 조합회의 의결 및 지방의회 의결 절차이행 여부

－ 조합해산에 따른 취득재산·사무이관 절차 이행여부 등

▶ 조합해산등기 등 후속조치 이행

- 조합해산 관련 지방의회 의결서 및 행정자치부의 해산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및 등기소에 해산등기 절차 등 이행

4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14.12.31 기준)

명 칭	구 성 원	목 적	승인일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경남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 1.2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경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 1.20
수도권 교통본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교통 광역교통 추진 운영	'05. 2. 4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충남도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 가 사무 및 외자유치 등	'08. 6.10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경북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8. 6.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장수·구례·곡성· 함양·산청·하동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관광개발사업 공동 추진	'08. 9. 5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6개 시·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상 생 발전 재원으로 활용	'10. 5. 3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91.11.7)'은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

'자치정보화조합('03.1.21)'은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 2.21)

※ (해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부산광역시-경남도, '11. 6. 8),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부산광역시-김해시, '11.12.29)

지방자치단체조합 명칭 사용



질의배경

- ◆ ‘○○○○조합’이 각급 행정기관 및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직능단체조합으로 인식되고 조합업무에 지장을 초래
-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현행 ‘○○○○○조합’의 명칭을 ‘○○○○○본부’로 명칭 변경이 필요

쟁점사항

<갑 설>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조직의 명칭 사용 또는 변경시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의무는 없음

<을 설>

-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상 명칭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합’ 명칭을 사용

의견

-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률에서 ‘조합’의 명칭사용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구’의 명칭은 어떤 종류의 기구인가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이 타당
- ◆ 다른 법령에서 기구의 명칭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바람직하며, ‘본부’ 명칭의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조문 등에 부합할 때 사용함이 타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시 및 ○○도가 대중교통중심의 ○○○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① 조합은 ○○○○사.○○○○시 및 ○○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시 ○○구 ○○로 99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 교통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의 사도를 연계하는 도로·철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4. ○○○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5. ○○○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6.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무
7. ○○○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 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 5인, ○○○○시 3인, ○○도 5인, ○○ ○○부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조합원의 교통업무 담당 국장 각1인
2.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1인
3.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시 3인, ○○○○시 1인, ○○○도 3인
4. ○○○○부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
5. ○○○○○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1인

④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자격을 가진 때까지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보궐선출 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부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7.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시, ○○○도, ○○○○시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 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조합회의의 구성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한다.

③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의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합원의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도와 ○○○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이 조합의 사무소는 ○○○도 관내에 두고, ○○○도 관내에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이 조합은 ○○경제자유구역안의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 내 ○○○도·○○○도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도지사○○○도지사의 직접 수행사무
 2.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3. 투자유치(외자유치를 포함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5. 외국인 생활 여건의 개선
 6. 그 밖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

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 9명, ○○○도 9명, ○○○○부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와 ○○○도의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담당 실국장 각 2명
2. ○○○○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도와 ○○○도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각 2명
4.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5명
5. 그 밖에 ○○○도지사와 ○○○도지사가 추천하는 5명(경제분야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 제3호, 제5호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예에 따른다.

⑦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결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결위된 경우 보궐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4.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5.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6.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7.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등)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도·○○○도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도지사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임명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도와 ○○○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부담) 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행정구역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와 ○○○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예산·회계 등)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5월 31일)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

런 조합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 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도의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량전철조합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광역시의회 및 ○○○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경량전철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행위나 조합에 대한 행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행위나 해당 주무관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라·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모든 조합의 권라·의무는 해당 주무관청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공부에 표시된 조합 명의를 이를 해당 주문관청의 명의로 본다.

제4조(사무이관)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의 소관 사무는 주무관청이 이를 승계하고, 승계되는 사무는 해당 주무관청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합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회의 위원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참고

조합해산 신고서 (예시)

조 합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없 음
해 산 조 합	①명 칭			
	②소재지			
	③청산인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청산인 주 소			
⑥해산 연월일				
⑦해 산 사 유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의 규정에 의거 해산 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해산당시의 조합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를 기재한 서류(조합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양여 합의결과 및 불용처리 내역) 각 1부. 3. 해산당시의 규약 1부. 4. 조합회의 회의록 및 안건(조합해산) 5. 지방의회 의결문				

별첨자료8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 2016.5.23.] [법률 제14077호, 2016.3.22., 제정] 공포법령보기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02-6908-8722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회)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填)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종훈 /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1. 지방 관료사회의 특징(문제점)

○ 강력한 지역 연고주의

- 지방의 경우, 도내 시군 등 출신지역의 인구수가 적어(00군의 경우 3만명 대 인구) 같은 출신지역 간의 응집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

○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토착세력화

- 주민 수가 적은 기초지자체 한 곳에서 수십년을 근무하다보면, 지역 유지와 유착관계가 형성

○ 보조금, 위탁사업의 방치

- 지방행정은 대부분 보조금 및 위탁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가 방치되거나,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예산 낭비가 발생.

○ 지나친 행사 및 의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행사를 성대하게 많이 치르는 것이 일 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일조

- 시민사회의 감시 견제기능이 취약

2. 지방자치단체 감사 현실

- 지방공무원 통제 수단의 한계로 인한 감사의 중요성 증대
 - 공무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인사권이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경우 그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 특히,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선거시 공무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임.
 - 독립된 감사기구가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됨.
- 독립성의 한계
 - 조직적 한계 : 광역단체의 경우, 5개 시도(제주, 서울, 세종, 광주, 충남)를 제외하고는 감사관이 행정부지사(부시장) 직속임.
 - 순환보직의 한계 :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소신껏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려움.
- 전문성의 한계
 -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 전문가를 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재정, 회계, 세무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합법성 위주의 감사
- 감사조직은 기피 부서
- 공모직 감사관(감사위원)에 민간인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
 - 공감법상 감사관(감사위원) 자격요건이 공무원에게는 후한 반면, 민간인에게는 매우 까다로움.
- 현행 감사위원회제도의 장점과 한계
 - 조직적 독립성은 제고됨 :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듦.

- 인사권의 한계로 실질적 독립성은 한계 : 감사부서 직원들의 인사권은 결국 자치단체장에 귀속되므로 감사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

3.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방안

○ 감사직렬 도입

- 문제점 : 소수직렬로 인사적체 문제
- 대안 : 6급까지 감사직렬로 묶고 5급부터는 다른 행정직과 통합

○ 전문성 확대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 적극 활용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특채 확대

○ 감사위원회 제도의 확대 및 제한적 인사권 확보

- 감사위원회 제도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독립성에 유리
- 감사기구 장에게 감사담당자 추천권 또는 감사담당자 배치시 동의권 확보

○ 중장기적으로 지방감사원 설립 검토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혁신방안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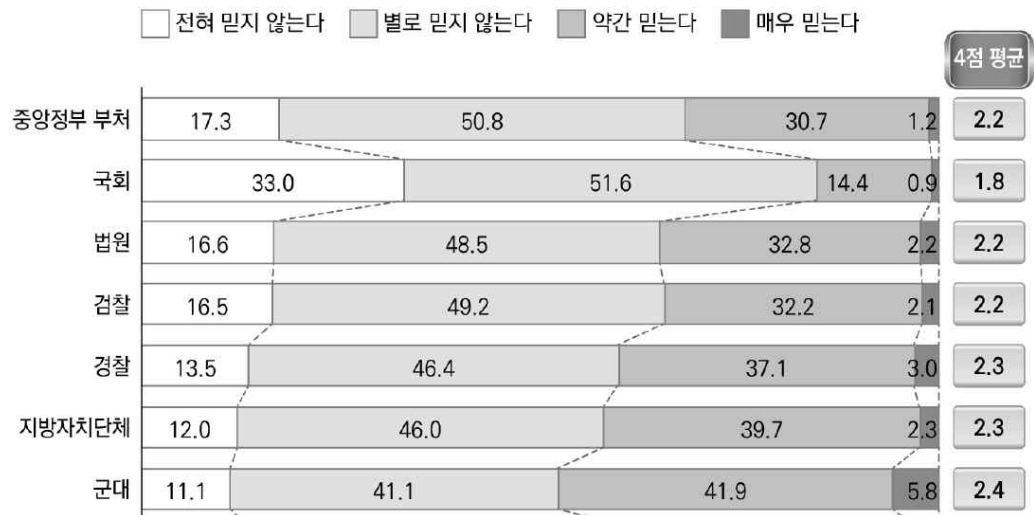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고, 부분적으로 그 동안의 논의가 반영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지방감사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자치감사 포럼이 결성되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방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원감사의 한계와 지방자체감사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그 중에서 지방감사의 독립성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송병춘 이사장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보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행정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반적인 정부신뢰도는 낮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의 감사시스템이 중앙방정부보다도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감사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렴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문헌에서 구체적인 입증없이 막연하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왔으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반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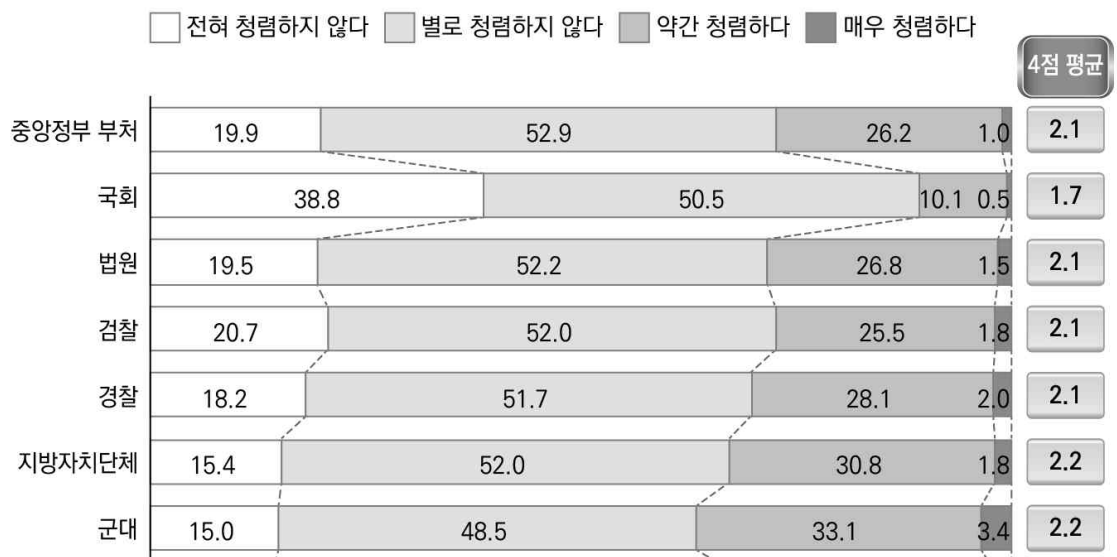
〈그림〉 기관별 신뢰정도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조사,

http://www.smallake.kr/wp-content/uploads/2016/02/4fkmd_2015-_-pdf, p.120

〈그림〉 기관별 청렴도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조사,

http://www.smallake.kr/wp-content/uploads/2016/02/4fkmd_2015-_-pdf, p.121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제기관보다는 합의제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정기관에 의한 임명보다는 지방의회나 주민에 의한 직선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선출과정에서 인적인 영향력이 강화되어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스위스나 미국의 상당수 지방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직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질문) 발표자는 발표자료 p.18에서 현행법제하에서는 감사관을 “우리나라 현행 법제 하에서는 감사관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싶다. 지방자치법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 합의제기관의 설치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만약 실정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소속기관이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기관 구성 다양화를 그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 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로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훌륭하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원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특정한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개별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태여 지방감사원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관에게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이양 받아 대신 수행하게 된다. 독립된 법인체이므로 자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체적인 규약과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으로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지방감사원자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되어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방감사원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지방감사원법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하나의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경우보다는 권력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강제적인 지방자치조합설립보다는 임의적 협력에 의한 설치방안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직원을 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복수의 지방감사원이 설치되면 서로 정책경쟁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실험과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조직형태는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제 기관보다는 최소한 3명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감사원을 구성원간의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지방감사기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업무감사를 해야 하며, 직무감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감사기관의 주된 역할은 징계나 처벌위주의 권력기관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와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결정을 위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감사기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

는 경우에는 부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감사의 역할을 사후적인 평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지출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보를 주민과 지방의회에게 제공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련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는 사전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지출을 하고 난 뒤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사후약방문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감사기관이 사전감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감사기관 사이에 정책쟁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정책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중앙정부의 청렴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감사기관은 중앙감사기관을 모방하는 형태로 구성해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이에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감사제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감사혁신을 이루고 그 중에서 성과가 높은 감사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나아가 위로 중앙정부의 감사체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규범 /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늘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감사원 처분요구 및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사항 등 외부감사 및 조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감사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적 감사기구가 마련되어 그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감사가 경제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회의 불공정을 시정·조정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발표자 송병춘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신뢰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공공감사의 기능, 공공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실태, 자치감사 독립성 확보에 대한 장애요인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분석을 통해 망라하고 있다. 발표자의 주장과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충적인 의견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 고유책임성의 보장 그리고 자치권의 보장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사무는 전권한성, 보편성 혹은 일반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관할사무의 포괄성으로부터 권한의 추정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어 있는 자치권의 보장은 자치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그 발동 대상이 일반적이고 그 발동의 형식이나 과정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상의 일반원리인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국가기능의 한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권력분립적 효과를 의도하는 ‘기능분배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업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의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격 주체이므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경우 회계 및 업무수행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업무 및 권한에서 제3의 중립적 기관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감사기구가 별도의 기관으로 예산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사기구를 가진 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지만 단기적인 대안으로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하더라도, 감사위원장 임명시 의회 동의,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적정한 임기 보장, 감사위원의 실질적 감사활동 보장, 상근직 감사위원의 임명을 통한 책무성 강화 등 독립적인 운영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가칭)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감사책임자의 경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한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 동일기관에서 전보형식으로 임명되거나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 대다수 임명되어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과 채용방식은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수감기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자체감사의 업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별 감사인력의 편차가 크고 적정감사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직렬이나 전문임기제 인력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감사인력의 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감사기능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감사기구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법의 전문성과 더불어 해당기관의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에서의 감사인력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하여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나 조례에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조치 조항을 마련하여 우수한 감사공무원 근무경력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이나 인사 시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사담당 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등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 시민감사관 또는 읍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에 참여하는 인원수의 기관별 편차가 크고 그 역할도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이 실질감사에서 감사담당자로서 역할하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수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유입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위탁감사제도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① -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행일 2016. 8. 17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tsc@pspd.org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①

-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